

# 파주시 에너지 조례

[시행 2023.04.10]  
(제정) 2023.04.10 조례 제1898호

관리책임부서명 : 기업지원과  
관리책임전화번호 : 031-940-8470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에너지법」 및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따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신·재생에너지 개발·보급 확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생활 촉진 및 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”란 최소의 경제적·사회적·환경적 비용으로 파주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.
- “신·재생에너지”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(이하 “신·재생에너지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.
- “미활용에너지”란 폐기물 소각열, 하수처리장·매립장의 메탄가스, 건물·지하철·공장·하수처리장의 배기수 및 배기열 등을 말한다.
- “고효율에너지기자재”란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2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기자재를 말한다.
- “사업자”란 「에너지법」 제2조제5호의 에너지사용자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의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.
- “산업부문”이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.
- “수송부문”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. 다만,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제외한다.
- “건물부문”이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말한다.
- “공공부문”이란 국가(정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포함한다)·지방자치단체(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포함한다)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.
- “시민단체”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와 관련하여 연구, 조사,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.
- “에너지 소외계층”이란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계층을 말한다.
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
  - 「노인복지법」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
  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또는 계층

12. “에너지 취약지역”이란 「[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](#)」 제3조제5호와 「[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](#)」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과 농어촌 외의 지역 중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말한다.

13. “에너지 복지”란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
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[에너지법](#)」, 「[에너지이용 합리화법](#)」, 및 신·재생에너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3조(에너지 시책의 기본방향)** 파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 시행계획
2. 신·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
3.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
4.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의 지속 관리
5. 에너지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 등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

**제4조(책무)** ① 시장은 파주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모든 시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자는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, 에너지의 생산·전환·수송·저장·이용 등의 안전성,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모든 시민은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,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 제2장 에너지계획 및 에너지 부문별 시책

**제5조(에너지계획)** ① 시장은 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신·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파주시 에너지 계획(이하 “에너지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 단위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
2.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
3.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홍보·교육에 관한 사항
4. 신·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
5.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·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
6.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7. 「[집단에너지사업법](#)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에너지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**제6조(산업부문)** ① 시장은 산업부문에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「[에너지이용 합리화법](#)」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「[에너지이용 합리화법](#)」 제36조에 따라 사업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미활용에너지의 자원화를 권장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신·재생에너지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.

**제7조(수송부문)** 시장은 수송부문에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1. 「[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](#)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·촉진 대책
2. 승용차 사용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추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
3.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와 이용시설 설치 확충
4. 그 밖에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교통대책

**제8조(건물부문)** ① 시장은 건물부문에서 「[건축법](#)」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·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건물의 신축·개축·증축 및 개·보수 시 건물주에게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시공을 권장할 수 있다.

**제9조(공공부문)** ① 시장은 공공부문에서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·재생에너지 보급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·관리
2.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설치
3.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절약 사업의 추진
4. 공용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
5. 공공건물의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

②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·토목공사를 계획·시행할 때 에너지 절약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에너지 복지)** 시장은 에너지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
2.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등 에너지시설 설치 지원
3. 신·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
4.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·조사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11조(교육·홍보)** ①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 등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, 시민,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·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·홍보관 건립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교육·홍보관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할 수 있다.

## 제3장 에너지위원회

**제12조(에너지위원회)** 시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·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에너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
2. 에너지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
3. 에너지 행정의 민·관 협력 방안 마련
4.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제·개정 에 대한 협의
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**제13조(위원회 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.

- ②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에너지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  1. 파주시의원 2명
  2.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또는 시민단체의 전문가
  3. 에너지 분야 공무원 또는 공사·공단 의 임직원
  4. 그 밖에 시장이 에너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에너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.

**제14조(위원회 운영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[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](#)」에 따른다.

## 제4장 에너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

**제15조(에너지센터)**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, 신·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에너지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-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1. 에너지 절약 방안 마련 및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지원
  2. 신·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·관리
  3. 시민이 참여하는 신·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및 지원
  4. 제5조에 따른 에너지계획 수립 지원
  5.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연구·개발
  6. 에너지 관련 국내·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추진
  7.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, 에너지 교육·홍보
  8.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
  9. 그 밖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-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④ 센터의 조직·인력·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## 제5장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 등

**제16조(시민참여 및 소통 강화)** ① 시장은 에너지 정책 수립과 사업 시행과정에서 에너지 수요·공급자로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시민참여·이익공유형 사업을 활성화하고, 사업참여가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여 갈등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정보를 시민, 시민단체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에너지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재정지원)** 시장은 에너지 부문별 시책과 신·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생산·이용·보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, 연구기관, 공공기관, 교육기관, 단체,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8조(신·재생에너지 보급 확대)** ① 시장은 시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법령 등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기준을 충족함은 물론, 가급적 의무기준을 초과하여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신·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시장이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.
- ③ 시장은 신·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**제19조(사무의 위탁)**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부문별 시책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기관, 대학, 연구소,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**제20조(포상)**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, 신·재생에너지의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 등의 시책에 기여한 개인·공무원·단체·법인 등에 대하여 「[파주시 포상 조례](#)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**제21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(2023. 4. 10. 조례 제1898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--